

1876년 ‘개항’의 개념적 의미와 역사적 성격

전 성 현*

| 목 차 |

- I. 머리말
- II. 개념의 ‘의미장’ 분석을 통해 본 개항의 의미
- III. 일본과의 조약체결과정과 개항의 성격
- IV. 맺음말

| 국문초록 |

개항이라는 용어는 1876년 이전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조일수호조규, 이른바 강화도조약 체결과정에 비로소 사용된 새로운 용어였다. 그렇다면, 이 용어가 지닌 개념적 의미는 무엇일까? 이를 위해 개념사 연구방법론 가운데 하나인 ‘의미장’ 분석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의미장 분석에 의하면, 개항은 만국공법에 기초한 조약에 의해 이루어졌다. 또한 자유로운 통상, 거주, 통행이 가능한 공간과 그에 따른 외교공간의 출현이 가능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물론 이와 같은 의미는 1876년 개항을 통해 일부 관철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뒤늦게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 의미는 개항의 개념 속에 지속되었던 것이다.

한편, 1876년 조선의 개항을 둘러싼 조일 간의 조규 체결과정을 살펴보면, 개항의 역사적 성격도 확인할 수 있다. 개항을 규정한 조규 등은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사학과 교수 / socequ21@dau.ac.kr

것과 같이 일본에 의해 요구되었지만 강제적으로 체결되었다거나, 일본의 힘의 우위 속에서 조선에 불평등하게 체결된 것은 아니었다. 조선 측은 이미 그리고 어느 정도 일본의 요구와 의도를 간파하고 있었다. 그에 대한 대비가 완벽하지 않았더라도 가능한 한 조선에 유리한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결과적으로 개항을 규정한 조일수호조규와 그 부속 문서들에서는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지도 조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지도 않았다. 조선의 개항, 즉 부산의 개항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현재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개항을 1407년으로 올려봐야 한다는 주장은 그 의미와 성격에서 역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407년 개항설의 첫 번째 근거가 개항 개념의 일반화와 탈시간성이며, 두 번째 근거가 1876년 개항의 강제성과 불평등성이기 때문이다. 다시 강조한다면, ‘개항’은 일반적 개념이 아니라 근대적 개념이며 그 의미도 만국공법에 기반을 둔 것이기 때문에 전근대의 역사적 상황을 일컫는 개념으로 사용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1876년 개항의 성격을 강제성과 불평등성에 두는 것도 단편적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의 입장에서 1876년 개항은 일본의 요구이긴 하지만 최대한 자국의 이해를 보장하려고 하는 움직임 속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주제어 : 개항, 1876, 1407, 의미장, 조일수호조규(부록), 부산구조계조약

I. 머리말

‘개항’은 일반적으로 1876년의 ‘불평등 조약’에 의한 ‘강제 개항’으로 이해되어 왔다.¹⁾ 이는 개항을 주도한 측이 어느 나라였는지, 그리고

1) 고종과 박규수의 개화사상에 근거하여 <조일수호조규>를 자주적 개항 의지의 산물로 보는 연구도 존재한다(姜在彦, 『朝鮮의開化思想』, 岩波書店, 1980. 손형부, 『박규수의 개화사상 연구』, 일조각, 1993. 이완재, 『박규수 연구』, 집문당, 1999; 이태진, 『1876년 강화도조약의 명암』, 『한국사시민강좌』 36, 2005. 이현주, 『自主的開國論形成에 관한 研究』, 『國史館論叢』 108, 2006. 구선희, 『고종의 서구 근대 국제법적 대외관계 수용 과정 분석』, 『東北亞歷史論叢』 32, 2011). 하지만 이는 조일수호조규의 체결과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보다는 배경에 따른 추론에 그쳤다고 할 수 있다.

개항을 규정한 근대적인 조약이 어떠한 것이었는지에 따른 이해였다. 이른바 부산을 시작으로 한 조선의 개항이 조선 침략을 위한 일본의 주도적이고 강제적인 개항이었고, 개항을 담은 조약의 내용도 당연히 일본에게는 유리하고 조선에게는 불리한 불평등한 조약이었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해였다. 기존 연구 성과는 세부 내용과 지향하는 바는 달랐지만 이와 같았다. 즉, 근대성의 측면에서 일본의 주도에 의한 개항을 강조하는 식민지 시기 일본 연구자들, 식민성의 측면에서 조선 침략을 위한 일본의 강제적 개항을 강조하는 해방 이후 한국 연구자들, 공통되게 ‘일본에 의한 개항’이라는 점은 공통된 견해였다.²⁾

그런데 개항을 둘러싼 일반적인 이해는 ‘개항’이라는 용어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어떠한 개항이지만 강조하거나 문제 삼았다. 1876년 개항의 근대성을 강조하든 식민성을 강조하든, 일본이라는 타율적인 힘에 의해 강제적으로 맺어진 불평등한 것이라는 전제는 동일했다. 따라서 전근대 조선에 의해 추진된 1407년 제포(나이포)와 부산포,³⁾ 1426년 염포⁴⁾ 등 삼포에 일본인이 들어올 수 있게 한 역사적 사실을 ‘개항’으로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일찍부터 있어왔다.⁵⁾ 현재 ‘삼포개항’은 교과서류와 백과사전류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기도 하다. 그 결과 지방자치제의 성립과 그에 따른 지역 정체성의 구축을 위한 지역의 역사화 과정에서 기존의 타율적인 부정적 개항의 의미를 지우고 자율적인 긍정적 의미의 개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심심찮게 지역사회에 제기되고 있다.⁶⁾

2) 박준형, 「개항을 바라보는 시선의 (불)연속」, 『역사비평』 114, 2016.

3) 『태종실록』 태종 7년(1407) 7월 27일(무인).

4) 『세종실록』 세종 8년(1426) 1월 18일(계축).

5) 申基碩, 「朝鮮朝 前期의 對日通交-三浦 恒居倭人 問題를 中心으로-」, 『玄岩 申國柱博士 華甲紀念 韓國學論叢』, 동국대학교출판부, 1985. 이영구, 「釜山港의 機能的 발전에 관한 史的考察-주로 三浦開港의 전후기 개관을 中心으로-」, 『韓國港灣經濟學會誌』 7, 1991. 한문중, 「조선전기 한일관계와 1407년의 의미」, 『지역과 역사』 22, 2008.

이는 개항의 개념과 성격을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특히 개항의 개념을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여 통시적이고 일반적으로 사용함으로써⁷⁾ ‘개항’ 개념을 둘러싼 시대적 의미와 역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개항을 둘러싼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들이 일본 측 자료에 주로 의존하는 한편, 식민지 지배라는 사후적인 결과를 토대로 한 일본의 근대성 또는 식민성만을 각각 강조함으로써 개항과 이른바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 ‘조일수호조규’의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이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⁸⁾ 나아가 기존 연구가 서구적 근대에 기반을 둔 공/부정의 양면적인 주장이라는 전제 아래 이를 다시 ‘또 다른 근대(전통이든 탈근대이든)’의 관점에서 새롭게 그 성격과 의미를 묻고 있다. 대체로 최근 연구들은 개항과 조약 체결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조선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조선 측 자료를 토대로 새로운 면을 드러내고 있어 그간의 조규와 개항의 성격을 보다 폭넓게 사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글은 개항의 개념적 이해와 개항을 가능케 한 조일 간의 조약을 들

-
- 6) 『KNN』 2009.5.11., ‘부산항 개항시기, 400년 이상 앞당겨야. 『海事新聞』 2008.7.1., ‘진해 개항 600주년 기념 ‘진해항만학술대회’ 개최. 『KNN』 2018.10.10., ‘부산항 개항 시기 놓고 공방’ 『국제신문』 2019.02.18., ‘1407년 vs 1876년... 부산항 개항 시기 논쟁 가열’.
- 7) 『부산일보』 2006.1.21., ‘[한자로 보는 문화] 開港(열 개/항구 항), 내년은 부산항 개항 600주년이라고 할 수 있건만.’
- 8) 김용구, 『세계관 충돌과 한말 외교사 1866~1882』, 문학과지성사, 2001. 윤소영, 『朝日修好條規의 역사적 위치』, 『한일관계사연구』 18, 2003. 이근관, 『朝日修好條規(1876)의 再評價-傳統的 東아시아 國際秩序의 觀點으로부터』, 『서울국제법연구』 11-1, 2004. 최덕수, 『개항과 朝日관계 : 상호 인식과 정책』, 고려대학교출판부, 2004. 月脚達彦, 『近代朝鮮のにおける「平等」と「不平等」』, 『東アジア近代史』 13, 2010. 『특집: 조일수호조규와 개항에 대한 다양한 시선』, 『역사비평』 114, 2016. 한일관계연구소 편, 『조일수호조규, 근대의 의미를 묻다』, 청아출판사, 2017. 박한민, 『조일수호조규 체제의 성립과 운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리싼 논의과정을 통해 개항을 둘러싼 성격 논쟁의 진폭을 확장하고자 한다. 최근 지자체와 지역사회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는 부산 개항의 역사적 연원을 조선시기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는 주장에도 문제제기함으로써 생산적인 토론의 장을 만들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개항’이라는 용어의 최초 사용으로 판단되는 1876~1877년의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 <조일수호조규부록(朝日修好條規附錄)>, 그리고 <부산구조계조약(釜山口租界條約)>과 이들 조약의 체결과정을 담은 자료들을 검토한다.⁹⁾ 그 가운데 개항의 의미를 개념상 방법론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개념적 의미를 확인하고 역사적 성격이 무엇이었는지를 드러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개항’이라는 개념이 통시적인 용어가 아니라 공시적인 역사개념임을 강조함으로써 그 개념의 역사성을 보다 면밀하게 드러낼 것이다.

이어 ‘개항’의 개념적 의미가 결론적으로 일본에 의한 근대적인 개념임에 불구하고 이를 어떻게 주체적으로 활용하고 이에 대응했는지 조선 측의 입장을 토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와 같은 과정은 개항의 성격을 자율과 타율의 이분법으로 재단하지 않고 <조일수호조규>와 <조일수호조규부록>, 그리고 부산개항과 관련된 <부산구조계조약>(일본 측 조약명, <부산항거류지차입약서(釜山港居留地借入約書)>) 체결과정에서의 조선 측 입장을 통해 개항의 역사적 성격을 다시 한 번 확인할 것이다.

9) 1875년 12월 26일부터 1880년 12월 29일까지 일본과의 외교관계와 일본사행의 내용을 일기식으로 기록한 의정부의 『倭使日記』(奎貴 16034-v.1-14)와 1875년 12월 26일부터 1876년 7월 6일까지 일본과의 사이에 조인된 수호조규와 부록, 그리고 무역규칙의 체결과정을 기록한 편자미상의 『隣交謄錄』(古 4280-1)은 물론, 조일수호조규의 체결과정을 담은 申櫛의 『沁行日記』, 작자미상의 『乙丙日記』, 姜瑋의 『沁行雜記』 등이 이에 속한다.

II. 개념의 ‘의미장’ 분석을 통해 본 개항의 의미

일반적으로 서양의 동아시아 진출과 관련해 항구의 개방과 국교의 수립을 의미하는 ‘개국’과 ‘개항’이라는 개념이 자주 사용되어 왔다. 그런데 실제 이들 개념은 중국과 서양과의 관계 속에서 추진된 조약에서 등장했던 것이 아니라 일본과 서양 또는 일본과 동양과의 새로운 조약 관계의 체결 과정에 사용되기 시작했다. 개국이라는 명칭은 일본에 의해 미국과 조약을 체결한 1854년 이후 적극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해 조선과도 이 개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¹⁰⁾ 이때 개국의 의미는 외교 및 통상관계의 새로운 체결로 규정되었다.

한편 개항은 개국의 하위 관계를 표현하는 개념으로 외국에게 일정한 지역을 개방하는 것이며 수교의 일부분으로 표현되었다. 일본은 1858년 미국과 맺은 통상조약에서 개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어 1871년 청과의 수호조규를 맺을 때 다시 ‘개항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 개념을 적극적으로 사용했다.¹¹⁾ 이처럼 개항이라는 용어는 일본에 의해 새롭게 창안되어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 또는 일본과 서구와의 근대적 조약체계를 맺으면서 사용되었다. 일본은 조선과의 새로운 조약체계를 맺을 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즉, 개항이라는 용어는 일본에 의한 조일수호조규의 초안을 통해 처음 조선으로 들어온 것이다.

조선도 체결 과정과 그 이후 이 용어를 점차 사용하기 시작했다.¹²⁾ 조

10) 김용구, 『세계과 충돌과 한말 외교사 1866~1882』, 문학과 지성사, 2001, 69~70쪽.

11) 이영호, 『한국의 ‘수호통상’ 확대와 개항도시의 성격』, 『동아시아 개항도시의 형성과 네트워크』, 글로벌콘텐츠, 2012, 180~181쪽.

12) 조선왕조실록, 일성록,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동문휘고 등 관찬사료에서 개항의 용어 사용을 확인한 결과 모두 1876년 이후부터 사용되고 있다. 이는 그 이전에 개항이라는 용어를 조선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개항이라는 용어는 지금까지도 모든 시대에 사용할 수 있는 통시대적 용어가 아니며 도입될 당시의 의미를 내포하는

선은 ‘개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는 했으나 그 의미가 지닌 식민성을 인식해서인지 자주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통상구안(通商口岸)’이란 용어를 더 자주 사용했다.¹³⁾ 따라서 개항이라는 용어의 역사적 의미를 확인하고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조규 체결과 조규 내용상의 규정에서 그 개념의 의미를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단순한 단어의 뜻만이 아니라 용어가 지닌 시대적 맥락과 역사적 의미를 보다 심도 깊게 이해하기 위해 개념사 연구 방법론을 활용하고자 한다. 개념사는 독일의 역사학자 라인하르트 코젤렉으로 대표되는 일군의 역사학자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개념사는 개념의 사용 시대, 특히 개념의 새로운 창출이 빈번했던 근대를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 기본개념’ 또는 ‘정치적 운동개념’에 집중되었다. 코젤렉에 의하면 “개념 해명이라는 노즐을 통과하면 과거의 진술들의 의미는 더 명확해지고, 그러한 언어적 포착을 통해 처음에 알아보고자 했던 실상이나 관계가 우리에게 더 뚜렷하게 가시화’될 수 있었다.¹⁴⁾ 즉, 개념의 해명은 개념이 사용된 시대의 역사적 실재를 보다 더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코젤렉의 ‘역사적 기본개념’은 주로 정치적 개념 또는 이데올로기적 개념에 한정되는 경향이었다.¹⁵⁾

그에 반해 볼프 라이하르트의 개념사 연구는 기본개념이 아니라 당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를 무작위로 뽑아 연구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개념사의 영역을 확장시켰다. 특히 그의 기본개념은 코젤렉의 “지배적인 집단의 선도개념”이 아니라 “전형적인 사회적 지식”이었다.¹⁶⁾

완전한 근대적 용어라고 할 수 있다.

13) 손정목, 『한국개항기 도시변화과정연구』, 일지사, 1982, 54~60쪽.

14) 라인하르트 코젤렉, 『개념사와 사회사』, 『지나간 미래』, 문학동네, 1998, 128~129쪽.

15) 김학이, 『볼프 라이하르트의 개념사』, 『개념사의 지평과 전망』, 소화, 2009, 93~97쪽.

16) 김학이, 위의 글, 2009, 98쪽.

그의 개념사 연구 방법은 구조주의 언어학으로부터 영향 받아 관련 단어들의 연결망인 개념의 ‘의미장’을 파악하여 분석하는 것이었다. 즉, 개념어는 “고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친화적인 단어들, 즉 동의어, 유의어, 공의어, 반의어와 함께 상호 작용하는 구조화된 총체를 이루어 존재하며, 특정 단어의 특화된 의미는 그 구조 속에서 비로소 분명해진다는 것이다.”¹⁷⁾ 따라서 라인하르트는 의미장에 개념어가 사용되고 있는 모든 자료에서 동의어, 유의어, 공의어, 반의어를 추출하여 계열, 통합, 원인, 반의의 장으로 구분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개념의 특화된 의미를 파악했다.¹⁸⁾ 이 글에서는 라인하르트의 의미장 분석틀을 가지고 개항 개념의 특화된 ‘역사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다만 ‘개항의 개념사’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¹⁹⁾ 개항 개념의 역사적 의미를 파악하는 정도로만 그친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현재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개항이라는 용어는 1876년 이전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첫 등장은 조규 체결과정이었으며 이후 조일수호조규, 조일수호조규부록, 부산구조계조약 등과 그 체결과정에서 종종 사용되었다. 이들 자료들을 토대로 개항 개념과 함께 사용되고 있는 친화적인 단어들을 수집하여 그 의미장을 구성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17) 김학이, 위의 글, 2009, 108~120쪽.

18) 로프 라인하르트, 『역사적 의미론: 어휘통계학과 신문화사 사이』, 『개념사의 지평과 전망』, 소화, 2009.

19) ‘개항의 개념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대별 개항의 의미장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그 의미의 변화를 추적하고 그 변화의 운동성을 파악해야 하며 그에 따라 개항의 의미가 어떻게 변화했고 또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방대한 작업이다. 이는 필자의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일반명사로서의 개항이 고유명사로서의 개항으로 의미화하는 최초의 역사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에 그치고자 한다. 개항의 의미장을 토대로 한 분석은 아니지만 부산항을 사례로 개항장 의미의 시대별 변화의 추이를 간략하게 살펴본 차철욱, 『개항장 개항 논쟁과 로컬리티 재구성』, 『부산의 정체성과 역사 쟁점 2회 부산의 근세사』, 부산박물관 개관 4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움 발표자료집, 2018, 47~52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표 1> 개항 개념의 의미장

開館, 開館港, 開口, 設館, 設置官吏, 公使留京(公使駐 京, 設館駐京) 通商處, 開館處, 互相開館 有官長	通商, 往來通商, 寬裕弘通, 貿易事務, 任意貿易, 通商 章程, (相互)往來貿易, 互 市, 賃借地面, 造營家屋, 任 居, 通航, 國律裁判 / 定界之防限
계열 통합 개항 원인 반의	
設館條款, 新館約條, 新立 條款(修好條規), 萬國公法, 約條(天下公法), 章程	萊館, 舊交易, 關市交易, 草 梁通商(不能公平), 萊館開 市(毋踰疆域), 舊條款, 舊 規, 舊例(東萊交市), 交隣 約條, 歲遣船

[출전] 『沈行日記』 上·下

[비고] 밑줄은 필자

먼저, <표 1>의 계열의 장을 살펴보자. 계열의 장은 개항을 직접적으로 지시하거나 혹은 해당 개념과 교환 가능한 동의어와 유의어들이다. 이들 단어 중 주로 개항과 대체 가능한 단어로는 ‘開館’, ‘開館港’, ‘開口’, ‘設館’, ‘通商處’, ‘開館處’ 등이다. 또한 직접 지시하는 단어로는 ‘設置官吏’, ‘設館駐京’(개항은 물론 관리를 파견하여 수도에 체류하게 하는 공사관의 수도설치도 포함), ‘互相開館有官長’(화친을 맺는 상호 간에 각각 개항하여 그 지역에 관리를 두는 것) 등이 있다.

여기서 개항 개념의 동의어 또는 유의어로 사용된 단어의 의미를 종합하면, 개항은 화친을 맺는 나라의 열린 특정한 지역을 의미했다. 뿐만 아니라 외교 관리의 파견과 상주는 물론 그 나라의 수도에까지 외교관이 주재할 수 있는 근대적 외교 관계를 의미했다. 그리고 이때 개항은 한 국가만의 일이 아니라 관계를 맺는 쌍방 국가 모두가 개항하여 관리

를 상주케 하고 외교관을 수도에까지 주재케 하는 것을 의미했다. 더 나아가 일본은 조규 초안 제12관에 “일본국은 예전부터 외국 인민의 통상을 인준한 각 항구에서 조선국 인민의 왕래와 무역을 동일하게 허락”하는 등 개항은 자국민의 타국 개항장에 거주하는 것까지 규정했다.²⁰⁾ 즉, 쌍방의 개항이지 일방의 개항은 아니었다.

이는 옛 왜관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조선의 입장에서 구래의 왜관 설치의 시장을 연 것이지 국경을 침범하는 것은 아니었다(“萊館開市毋踰疆界”).²¹⁾ 그런데 ‘設館駐京’은 국경을 침범하는 것이었기에 조선 측은 부록의 체결과정에서 ‘公事官不可留駐京成事’라고 하며 공사관의 서울 체류를 끝까지 거부해 결국 개정안에서 삭제시켰던 것이다.²²⁾ 나아가 각국의 법제는 동일해 “개관의 모든 절차 또한 추호도 이웃나라에 폐를 끼치지 않아서 공관 건물 역시 스스로 임대하거나 신축하고, 사소한 물건도 반드시 값을 치르고 구매”해야 했다.²³⁾ 이 때문에 개항의 반의어 계열에 조선이 모든 것을 배풀었던 구래의 ‘草梁館’, ‘萊關’이 포함되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통합의 장을 살펴보자. 통합의 장은 개항 개념의 내용을 형용하거나 설명하는 단어들이다. 이 계열은 크게 세 가지로 다시 세분할 수 있다.

첫 번째가 통상이다. 개항과 거의 함께 쓰이는 공의어라고 할 수 있다. 통상은 ‘往來通商’, ‘貿易事務’, ‘任意貿易’, ‘通商章程(貿易章程)’, ‘相互往來貿易’, ‘互市’ 등으로 사용되었다. 모두 양국 인민에 의한 자유로운 통상, 무역을 의미했다. 이는 <부표 2>의 부록과 함께 체결된 <표

20) 『沁行日記』 上, 丙子正月十九日(양력 1876년 2월 13일).

21) 『倭使日記』 丙子正月二十六日 啓下; 『沁行日記』 下, 丙子正月二十六日(양력 1876년 2월 20일).

22) 『倭使日記』 권4, 丙子 6월 21일 講修問答.

23) 『沁行日記』 上, 丙子正月二十一(양력 1876년 2월 13일).

2>의 무역규칙을 통해 보다 잘 드러난다.

<표 2> 무역규칙 초안 및 수정안

	초안	체결안
제1칙	일본상선(일본정부소관의 군함 및 전용통신선박 제외)이 조선국에서 허락한 무역항에 들어갈 때, 선주 또는 선장은 일본인민관리관이 발급한 바의 증서를 조선관청에 3일 안에 제출해야 한다.	일본국 상선(일본정부소관의 군함 및 전용통신선박 제외)이 조선국에서 허락한 무역항에 들어갈 때, 선주 또는 선장은 일본국 인민관리관이 발급한 바의 증서를 조선국 관청에 3일 안에 제출해야 한다.
제2칙	일본상선이 상선의 물건을 항구에 起載하고자할 때는 선주 또는 화주가 다시 그 화물의 이름 및 元價, 尺量, 數目을 기재하여 조선관청에 明明하고 관청은 조속히 卸貨准單을 발급해야 한다.	일본국 상선이 상선의 물건을 항구에 起載하고자할 때는 선주 또는 화주가 다시 그 화물의 이름 및 元價, 尺量, 數目을 기재하여 조선국 관청에 明明하고 관청은 조속히 卸貨准單을 발급해야 한다.
제3칙	선주, 화주는 제2칙을 准聽한 후 기재하며 조선 관리가 검사하고자 하면 화주는 감히 거절 못하고 관리 역시 주의하여 검사하고 훼손이 없도록 해야 한다.	선주, 화주는 제2칙을 准聽한 후 기재하며 조선국 관리가 검사하고자 하면 화주는 감히 거절 못하고 관리 역시 주의하여 검사하고 훼손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4칙	출항 화물의 화주는 제2칙의 입항 화물 報單서식에 비취 화물 적재 선명, 화물명과 수를 조선관청에 제출하고 관청은 조속히 出口貨准單을 발급하며 화주는 준단을 받는 즉시 본선에 화물을 실고 관청에서 혹여 검사하면 화주는 감히 거절할 수 없다.	출항 화물의 화주는 제2칙의 입항 화물 報單서식에 비취 화물 적재 선명, 화물명과 수를 조선국 관청에 제출하고 관청은 조속히 出口貨准單을 발급하며 화주는 준단을 받는 즉시 본선에 화물을 실고 관청에서 혹여 검사하면 화주는 감히 거절할 수 없다.
제5칙	쌀과 잡곡을 수출입할 수 있다. 만약 조선에 거둬 흉년이 들면, 일본인민은 조선정부의 바라는 바에 따라 米糧을 가져와 팔고 수년 후 값아도 무방하다.	일본국 상선이 출항이 필요하면 전일 정오 전 조선국 관청에 알리어 하고 관청이 보고를 받으면 이전에 수령한 증서를 돌려받고 출구준단을 발급한다. 일본국 우편선은 成規의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출항할 수 있지만 반드시 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제6칙	<p>일본상선이 출항이 필요하면 전일 정오 전 조선관청에 알려야 하고 관청이 보고를 받으면 이전에 수령한 증서를 돌려받고 출구준단을 발급한다. 일본우편선은 成規의 시한에 구에받지 않고 출항할 수 있지만 반드시 관청에 보고해야 한다.</p>	<p>사후 조선국 항구에 住留하는 일본인은 米糧 및 잡곡을 수출입할 수 있다.</p>
제7칙	<p>조선정부 혹은 그 인민이 지정 무역항 이외의 곳으로 각 물건을 운수할 때 일본상선을 고용할 수 있으며, 雇主가 만약 인민이라면 조선정부의 준단을 살핀 이후 雇役해야 한다.</p>	<p><u>港稅</u> 連檣上선 및 증기상선의 세금은 5원(圓)이다. (모선에 부속된 各정(脚艇) 제외) 單檣上선의 세금은 2원이다.(500석 이상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것) 단외장상선의 세금은 1원 50전이다.(500석 이하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것) 일본국 정부에 소속된 모든 선박은 항세를 납부하지 않는다.</p>
제8칙	<p>일본선척이 만약 통상이 허락되지 않은 조선 口岸에 이르러 사사로이 매매하는 것이 그곳 지방관의 조사에서 드러나면 가까운 관리관에게 보내고 관리관은 소유 錢物 모두를 몰수하여 조선관청에 교부한다.</p>	<p>조선국 정부 혹은 그 인민이 지정 무역항 이외의 곳으로 각 물건을 운수할 때 일본상선을 고용할 수 있으며, 雇主가 만약 인민이라면 조선정부의 준단을 살핀 이후 雇役해야 한다.</p>
제9칙	<p>양국이 지금 정한 규칙은 사후 양국 상민의 무역 형세와 상황에 따라 각 위원이 수시로 사정을 酌量하고 會商하여 개정한다.</p>	<p>일본국 선척이 만약 통상이 허락되지 않은 조선 口岸에 이르러 사사로이 매매하는 것이 그곳 지방관의 조사에서 드러나면 가까운 관리관에게 보내고 관리관은 소유 錢物 모두를 몰수하여 조선국 관청에 교부한다.</p>
제10칙		<p><u>이편담배의 판매를 엄격히 금지한다.</u></p>
제11칙		<p>양국에서 지금 정한 규칙은 사후 양국 상민의 무역 형세와 상황 여하에 따라 각 위원이 수시로 사정을 酌量하고 會商하여 개정한다. 이를 위해 양국 위원이 각각 날인하면 즉일 준행한다.</p>

[출전] 『倭使日記』 권4, 丙子 6월 16일 彼人所定講本 ; 『倭使日記』 권5, 丙子 7월 6일 講修問答 ; 『고종실록』 13년 7월 6일.

그런데 <표 2>의 무역규칙은 일본만의 것이지만 애초 통상은 상호 왕래 통상이기 때문에 쌍방의 의미를 지녔다. 특히 조규에 명확하게 규정된 ‘寬裕弘通의 法’이란 근대적인 상호 ‘자유무역’을 의미했다.²⁴⁾ 따라서 인민들 간의 자유로운 거래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도록 거듭 강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조선 측에서 이미 왜관을 통해 호시, 개시, 매매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통상이 필요한가라고 질문했다. 일본은 구래의 공무역이나 관에 의한 호시, 개시, 매매와는 완전히 다른 자유로운 통상을 의미한다고 그 차이를 강조했다. 이른바 관의 개입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구래의 공평하지 않은 ‘草梁通商’ (“開港通商 與草梁通商 有大不同者”), 관에 의한 ‘萊館開市’ 또는 ‘東來交市’는 개항의 반의어에 포함될 수밖에 없었다.²⁵⁾ 다만 빗발치는 상소문에서 언급되는 것처럼 조선 측은 자유로운 통상을 통해 洋貨가 들어올 수 있다는 문제제기는 받아들여야 했다. 따라서 조규 체결과정에서 금조 6칙을 제시하며 서양인, 서학 그리고 아편의 출입을 금지하고자 했다. 구체적인 규정으로 [표 2]의 무역규칙에 아편담배의 판매를 엄격하게 금지한다는 제한을 두는 선에서 자유로운 통상을 부분적으로 인정했다.

두 번째는 거주이다. 이는 개항장, 개항지, 개항처에서 조약국 인민의 거주를 의미했다. 통상과 마찬가지로 ‘任居’, 즉 마음대로 거주가 가능한 것이었다. 또한 거주를 위해 인민들 간에는 자유롭게 토지를 임차할 수 있고 가옥을 지을 수 있는 것을 의미했다. 즉, 개항에 따른 거주는 ‘자유로운 거주’였다. 이를 위해 일본은 세틀먼트(settlement) 방식의 ‘거류지’라는 용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했다. 세틀먼트는 거주지를 외국인민이 토지소유자와 개인적으로 직접 교섭하여 永借하는 형식으로 부산 개항을 토대로 영구적으로 자유롭게 거주하며, 개항장인 부산 전체를 일

24) 김종학 옮김, 『국역 을병일기』, 국립중앙도서관, 2014, 106쪽, 주143 참조.

25) 『沁行日記』上, 丙子正月二十一(양력 1876년 2월 13일).

본인이 거주 가능하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를 내포한 것이었다. 조선은 개항장 내에서의 자유로운 거주는 어쩔 수 없이 인정했다. 다만 그 거주를 住留, 駐留, 羈留 등 ‘잠깐 거주’로 치부하며 그 영역을 권세선 (concession) 방식의 조계로 묶어두고자 노력했다.²⁶⁾

세 번째는 통항 또는 통행이다. 이는 측량선은 물론 외교관의 수도 체류 그리고 통상을 위한 내지 진출의 자유를 의미했다. 이처럼 애초부터 개항 개념은 자유로운 내륙으로의 통행, 통항을 의미했다. 일본은 이 개념을 적극 사용했고, 자신들과 조약을 맺고 있는 17개국의 공통된 법칙이며 개항장에서의 각국 법제도 대략 이와 같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선 정부는 개항장 내에서의 자유로운 거주는 인정해도 그 밖으로의 진출은 용납할 수 없었다. 처음부터 開行里程과 함께 ‘定界의 防限’을 집요하게 규정하고 가능한 한 개항장의 조계 안에 묶어 두려고 노력했다. 일본은 통상 구역의 확대를 통한 자유로운 통행과 통항을 위해 이른바 한행이정을 일본이법으로 10리, 조선이법으로 100리를 주장했다. 반면 조선 정부는 조선이법 10리로 제한하는 한편, 구례의 예를 따라 정계의 방한으로 표식인 말뚝을 세워 그 진출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다.

이제 개항 개념의 의미장 중 마지막인 원인의 장을 살펴보자. 원인의 장은 개항을 구체화한 역사적인 사건, 인물, 원인과 관련된 단어들이 이에 속한다. <표 2>를 보면 개항의 원인은 개항이라는 용어가 제일 처음으로 사용되었던 조일수호조규와 잇닿아 있었다. 이 조규는 단순히 나라 간 맺는 전통적인 약조가 아니라 새로운 약조, 조관, 조약, 장정이었다. 이전과 다른 결정적인 것은 만국공법 또는 천하공법에 기초한 양국 간의 조약이라는 점이었다. 따라서 개항은 세계가 모두 인정하는 공법체제 속의 근대적 조약과 관련된 것이었다.²⁷⁾ 최근 연구

26) 전성현, 앞의 논문, 2018, 339~347쪽.

에서 조일수호조규는 조규라는 구례의 전통적인 동아시아 세계질서와 조약이라는 서구적인 세계질서의 절충된 과도기적인 국가 간 협약임을 강조하기도 한다.²⁸⁾ 이와 같은 과도기적인 체계라도 해도 개항은 일본에 의해 조선을 서구자본주의 근대체제로 견인하고자 하는 의도 속에서 추진된 근대 조약과의 관련성 속에 자리매김하고 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상 개항 개념의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개항 개념은 일본에 의한 조선의 서구자본주의 체제로의 편입을 의미하며, 일본의 조선 진출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일본에 유리한 개념이었다. 그런데 조선은 이와 같은 개항의 의미를 일본과의 본격적인 외교관계에서 어느 정도 간파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조선의 개항이 일본인의 자유로운 조선 거주와 통상이라는 점을 파악하고 제한적인 거주와 통상으로 줄곧 대응했다. 초기 일본이 만국공법, 천하공법이라며 강조한 개항이라는 개념을 무비판적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점차 '통상구안'이라는 중국 측과 유사한 용어로 자주 사용하는 것에서도 대응의 모습은 어느 정도 드러났다. 결국, 개항을 둘러싼 조일 간의 외교는 일본에 의해 추진되는 개항과 조선에 의해 추진되는 개항이라는 일면 동일하지만 내용이 다른 형태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일본과의 조약체결과정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27) 안중철, 「19세기 '국제법'의 성격과 조일수호조규(1876)」, 『역사비평』 114, 2016, 123~129쪽.

28) 윤소영, 「朝日修好條規의 역사적 위치」, 『한일관계사연구』 18, 2003. 이근관, 「朝日修好條規(1876)의 재평가-傳統的 東아시아 國際秩序의 觀點으로부터-」, 『서울국제법연구』 11-1, 2004.

Ⅲ. 일본과의 조약체결과정과 개항의 성격

1. 〈조일수호조규〉와 조선의 적극적 대응

이제 개항, 특히 부산 개항의 성격을 다시 살펴보기 위해 개항을 규정 한 <조일수호조규(이하 조규)>, <조일수호조규부록(이하 부록)>, <부산구조계조약(이하 조약)>의 체결과정과 조선 측의 대응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자. 알려져 있는 것과 같이 조규는 일본의 조선 침략을 위한 운요호사건과 그 해결을 구실로 서구를 모방한 포함외교에 따른 체결로 널리 알려져 있다.²⁹⁾ 이후의 연구도 이에 기반을 두고 그 강제성과 불평등성을 강조했다.

최근 조선 측 자료의 발굴과 함께 진행된 연구를 통해 볼 때, 조규의 체결과정과 내용은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것 같다. 일본의 당시 입장은 조규의 체결과 내용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강제할 만큼 그렇게 강력하지 못했다. 일본은 그간 조선 측과 갈등을 빚었던 서계문제와 운요호 사건, 그리고 이를 빌미로 한 조선과의 조약체결을 위해 서구의 포함외교를 모방해 교섭에는 나섰다. 하지만 사절단이 거둬 주장한 것과 달리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져오지 못했다. 더군다나 일본 내에서는 여전히 ‘征韓과 反征韓’의 긴박한 대치과정이었기에 전쟁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일본 내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조선과의 관계 회복은 필수적이어서 그저 ‘和交와 和約’에만 조급해 했다.³⁰⁾ 공갈과 회유 그리고 설득 등 어떠한 형태로든 이를 타개할 수 있는 ‘개항을 의미하는 조규’만 필요했던 것이다.³¹⁾

29) 田保橋潔, 『近代日鮮關係の研究』上, 朝鮮總督府中樞院, 1940, 454~471쪽.

30) ‘전권변리대신 구로다 기요타카에게 부여된 훈조와 내유’(김종학, 『곤경에서의 탈출 -조일수호조규의 체결 과정-』, 『조일수호조규, 근대의 의미를 묻다』, 청아출판사, 2017, <부록 1>).

그렇다면 조선 측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을까? 그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당시 조선은 일본의 조규내용은 물론 조규체결을 위해 왔다는 사실에도 ‘무지’했다고 하는 것이 기존 연구의 정설이다. 식민지시기 오쿠다이라 다케히코[奥平武彦]와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 등의 연구에서부터³²⁾ 해방 이후 연구에서도 그대로 답습되었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최근 연구에서는 조규에 대한 ‘무지’를 재고하고 조선의 논리와 입장으로 대응해간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³³⁾

조선 측의 대응을 강조하는 최근 연구에서도 특명전권변리대신 구로다 기요타케[黒田清隆]의 파견을 미리 예고한 히로츠 히로노부[廣津弘信]의 구진서와 별함,³⁴⁾ 야마노조 스케나가[山之城祐長]의 구진서,³⁵⁾ 그리고 조규 체결을 위한 신현과의 3차례의 회담에서 실제 조규체결의 내용이 두 번째 회담부터 나온 점을 들어 체결을 위해 온 것은 몰랐다고 강조했다.³⁶⁾ 하지만 조규 체결을 위해 강화로 간 신현 일행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일본 측 사절단의 움직임에 기만하게 대응하고 있던 조선 정부는 그 이유가 단순히 서계문제와 운요호 사건의 시비만이 아님을 알아차렸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 사절단의 배를 문정한 남양부사의 의정

31) 김종학, 『조일수호조규는 포함외교의 산물이었는가』, 『역사비평』 114, 2016. 한일관계사연구소 편, 앞의 책, 2017.

32) 奥平武彦, 『朝鮮の條約港と居留地』, 『京城帝國大學法學會論集(9) 朝鮮社會法制史研究』, 岩波書店, 1937. 田保橋潔, 앞의 책, 1940.

33) 박한민, 앞의 논문, 2017, 3~6쪽. 특히 박한민의 연구는 조규 체제의 운영 과정에서 조선 정부가 어떠한 입장과 논리로 적극적으로 대응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34) 신현 지음·김종학 옮김, 『부록 4-3, 히로츠 히로노부廣津弘信의 구진서와 별함』, 『심행일기』, 푸른역사, 2010, 374~375쪽. 이하 각주의 심행일기는 김종학 옮김의 심행일기이다.

35) 『乙丙日記』上, 乙亥年十二月十九日 萊館問答(양력 1876년 1월 15일)(김종학 옮김, 『국역 을병일기』, 국립중앙도서관, 2014, 5~6쪽). 이하 각주의 을병일기는 국역 을병일기이다.

36) 김종학, 앞의 글, 2016, 42쪽. 김종학, 『곤경에서의 탈출: 조일수호조규의 체결 과정』, 앞의 책, 2017, 81~88쪽.

부 보고에서 외무대승 미야모토 오카즈[宮本小一]는 아래와 같이 그 목적이 변경된 교린과 수호에 있음을 드러냈다.

我: 대신이 왔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들을 수 있겠습니까?

彼: 우리나라의 모든 사무가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교린에도 변경된 바가 있어서 부득불 이번 사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대체로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바로 수호를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대사가 아니라면 저처럼 고귀한 대신이 어찌 출정할 리가 있었습니까?

我: 300여 년간 서로 우호한 情誼가 있는데, 무슨 다른 수호가 있던 말입니까?

彼: 속사정은 저희가 짐작할 수 없습니다.(이하 생략, 밑줄은 필자)³⁷⁾

이 보고로 조선 정부는 일본이 교린의 변경에 따른 수호를 위해 왔음을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본 회담 첫 번째 날 연향 때, 구로다 키요타카가 양국의 만남을 서계문제와 운요호 사건의 시비를 가리는 ‘大事의 辨理’와 ‘옛 우호의 증수’라고 하면서도 ‘대사의 변리’만을 거듭 강조하자 신헌은 “그처럼 사소한 일을 옛 우호를 다시 맺는 자리에서 어찌 장황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힐문했던 것이다.³⁸⁾

또한 조선 정부는 그 전부터 ‘중국과 외국 사이에 체결된 모든 조약의 사본과 휘튼 국제법의 북경 번역판을 소유하고’ 있었다.³⁹⁾ 일본이 새로

37) 『乙丙日記』上, 丙子年一月四日(양력 1876년 1월 29일).

38) 『沁行日記』上, 丙子正月十七日(양력 1876년 2월 11일).

39) 조규 체결이 있는 지 바로 다음, 사절단의 일원이었던 모리야마 시게루가 주일 영국 공사 파크스(H. Parkes)에게 한 대화 속에서 이미 조선 정부의 대비를 확인할 수 있다 (안중철, 『19세기 ‘국제법’의 성격과 조일수호조규(1876)』, 『역사비평』 114, 2016, 123~124쪽. 한승훈, 『조일수호조규 체결 전후 영국의 대조선정책』, 『조일수호조규, 근대의 의미를 묻다』, 청아출판사, 2017, 218~219쪽).

은 조규를 체결하고자 할 때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준비는 갖춘 상태였던 것이다. 일본 측이 조규 초안 전문에 ‘대일본국 황제폐하’와 ‘대조선국 국왕전하’라는 표현을 넣어 제시하자, 곧바로 중국과 영국이 맺은 조약의 내용을 가지고 정부와 정부 사이의 협약으로 바뀌버렸다.⁴⁰⁾ 이처럼 조선은 처음부터 일본의 속내를 간파하고 ‘옛 우호의 중수’를 주도하기 위해 기민하게 대응했다.

조선 측 대응은 일본 측의 조규 초안에 대한 대응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부표 1>은 일본 측의 조규 초안과 조선 측의 조규 수정안, 그리고 체결된 조규 최종안을 정리한 것이다. <부표 1>을 통해 볼 때, 조규 초안은 일본의 입장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구성되었음은 물론이다. 기본적으로 초량을 비롯한 다른 개항지의 설정과 인민의 자유로운 거주와 통상 및 편무적 영사재판관을 규정한 제4, 5, 8, 9, 10관, 그리고 불평등조약의 전형적인 조항 중 하나인 최혜국 대우의 12관이 특히 그랬다.

하지만 조선 정부는 이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적극적으로 조선의 입장에서 수정해 나갔다. 먼저, 그간의 논란이 된 서계문제도 있어 전문의 ‘대일본국 황제폐하’와 ‘대조선국 국왕전하’를 단지 국호인 일본국과 조선국으로 수정토록 했다. 이어서 제3관의 조규 체결 이후의 교제사무, 즉 외교사무가 필요하다면 ‘平等之禮’의 원칙에 따라 동등하게 진행하며 대체로 통상사무는 개항장의 양쪽 관리가 처리하도록 했다. 제4, 5관의 초량 및 2개 지역의 개항도 초량의 경우 기존의 초량관에 ‘設館’하여 그 ‘定界의 防限’을 정하도록 했다. 일본이 요구한 영흥을 비롯해 京畿와 兩湖(충청과 전라)에서의 개항도 허락하지 않았다. 제12관의 최혜국 대우에 관해서는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타국과의

40) 『沁行日記』下, 丙子正月二十八日(양력 1876년 2월 22일). 『乙丙日記』下, 丙子年一月三十日(양력 1876년 2월 24일).

통교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불허했다. 조선 측의 수정은 <부표 1>의 최종안에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한편, 특별히 논하거나 구애될 필요가 없다고 한 것과 모두 들어줄 수 있다고 한 제1, 3, 6~9, 13관도 외교 문서의 일반적 사항인 제1, 3, 13관만 아무 문제없이 받아들였을 뿐 나머지도 금지 조항을 통해 수정하고자 했다. 제6~9관과 관련된 일본 인민의 자유로운 통행, 통상, 거주에 대해서는 ‘六則禁條’를 설정하여 입약하고 양해각서를 받고자 하는 등 조선 측 입장을 세밀하게 반영하고자 했다.⁴¹⁾ 하지만 조규의 체결 기한이 촉박해 구체적인 세부항목의 협상을 6개월 후로 미룬 일본 때문에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 그저 미야모토 오카즈의 사적인 각서인 수계를 받는 것에 그쳤다.⁴²⁾ <표 3>은 조선 정부의 여섯 가지 금지하는 규칙과 이에 대한 미야모토 오카즈의 수계이다.

<표 3> 조선 측 추가 6칙과 일본 측 수계

議政府 六則 禁條	미야모토 오카즈 수계
<p>저들이 이미 이와 같이 여러 조관의 요구를 제시했으니 우리나라도 어찌 강정할 것이 없겠는가?</p> <p>제1칙: 상평전의 사용은 불허한다.</p> <p>제2칙: 미곡은 교역할 수 없다. 미곡은 동래 왜관에서도 일찍이 교역하지 않았던 것이다.</p> <p>제3칙: 교역은 단지 물물교환만 가능하</p>	<p>무역 등의 일로 타국에 가는 모든 일본국 선박은 반드시 교부한 선패 및 항해공증을 소지해야 한다. 항구에 도착해서 48시간 이내에 해당 선주가 선패와 공증을 그 지방의 주재영사관에게 제출해서 증명을 받은 후에야 본국 선박임이 확실하게 입증된다. 또 각 선박은 반드시 국기를 세워야 한다. 국기는 지극히 귀중한 물건이므로 만일 갑국 선박이 을국의 旗號를 허위로 게양하면 해적과 동일하게 간주해서 을국 병함이 緝拿하여 징벌한다.</p>

41) 『倭使日記』 丙子 1월 26일 啓下. 『沁行日記』 下, 丙子正月二十八日(양력 1876년 2월 22일).

42) 『沁行日記』 下, 丙子二月二日(양력 1876년 2월 26일).

<p>다. 물품은 외상으로 선매할 수 없으며 또한 사채를 풀어서 이자를 취할 수도 없다. 이 두 가지는 양국의 큰 폐단의 무궁한 근원이므로 반드시 명백하게 입약해야 한다.</p> <p>제4칙: 우리나라는 오직 일본하고만 교호할 뿐이니 타국인이 섞여 들어와서 雜處하는 일이 생긴다면 크게 안 될 일이다. 이 문제 또한 반드시 명백하게 입약해야 한다.</p> <p>제5칙: 아편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우지 않는 것이며, 西教는 국법으로 엄금하는 것이다. 만일 아편이나 그 서적을 훔치라도 반입한다면 和好가 절대 영구히 지속될 방법이 없을 것이니 즉시 명백하게 입약하라.</p> <p>제6칙: 양국의 표류민을 상호 구조해서 돌려보내는 것은 본래 오래된 규칙이었다. 그러나 망명해서 고의로 표랑하는 부류는 마땅히 적발하여 본국으로 송환한 후에 법으로 다스려야 하니 반드시 명백하게 입약하라.</p>	<p>하나, 조선 정부는 아편이 항구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되 일본 인민에게 피해가 없어야 한다.</p> <p>하나, 현재 일본 인민이 예수교를 신봉한다는 말은 듣지 못했으나 조선 정부에서 일본 인민이 혹시 조선 인민에게 예수교를 전파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금지하려는 것이니 일본 정부는 이를 인정해야 한다.</p> <p>하나, 타국 인민이 조선국 각 통상 항구에서 일본 인민의 名籍을 빌려서 거주 혹은 무역을 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불허하는 바이다.</p> <p>이상의 건은 신 대관의 詢問을 받았음으로 鄙見을 이와 같이 진술한 것이다. 외무대승 미야모토 오카즈</p>
--	--

[출전] 『倭使日記』 丙子 1월 26일 啓下; 『汎行日記』 下, 丙子正月二十八日(양력 1876년 2월 22일), 丙子二月二日(양력 1876년 2월 26일)

<표 3>에서처럼 조선 측의 6칙 금조에 대해 일본 측은 개항장의 매매에 사용되는 상평전의 사용은 교역을 금지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니 실행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항변했다. 미곡의 경우 흉년에 따른 구매도 불가하다면 ‘교린수호의 우의’는 어디에 있느냐며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일로 교섭도 단절될 수 있다고 세부항목 협상으로 돌렸다. 반면, 조선 측은 흉년일 경우 미곡의 출입은 공문으로 증빙해서 사무역의 폐단을 엄금하

는 것이 좋겠다고 예외를 두면서도 자유로운 통상에도 제한을 가하고자 했다. 그 외 외상 선매와 사채노름의 근절, 그리고 서양 선박, 아편, 서화 등을 엄금하는 일은 받아들여 서계까지 작성했다.⁴³⁾

이처럼 조선 측은 일본 측의 조규 초안이 지닌 불명확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자고 오히려 일본 측을 압박했다. 일본 측은 조규의 체결에만 목적을 뒀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규정은 뒤로 미룬 채 조규 체결을 마무리 지었다. 어쨌든 조선은 조규 조항 속에 숨어 있는 일본 측의 구체적인 의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조규에 따른 개항이 초래할 자유로운 통상, 통상, 그리고 거주를 가능한 한 전통적인 방식 또는 이를 토대로 한 새로운 방식으로 막기 위해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었다. 특히 자유로운 거주에 대한 ‘정계의 방한’을 정한다든지 자유로운 통상에서 미곡을 비롯해 허용할 수 없는 것들 금지한다든지 하는 모습을 통해 이러한 고민들이 조규의 행간에 숨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일본은 자신들의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 상세항목의 협상을 위한 수순을 밟아야만 했다. 후속 조약들은 그 때문에 곧바로 추진되었다.

2. 조일수호조규부록 및 부산구조계조약과 부산의 개항

양국의 수호와 함께 이제 개항에 따른 통상, 통상, 그리고 자국민의 거주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항목의 협상이 필요했다. 따라서 조규 제11관에 규정한 6개월 내 통상장정 설립과 세목보충을 위해 1876년 8월 앞선 조규 체결에도 참여했던 이사관 미야모토 오키즈와 講修官 조인희 사이에 부록 체결을 위한 협상이 벌어졌다. 그 과정의 대강은 [부표 2]와 같다.

43) 『沁行日記』 下, 丙子正月三十日(양력 1876년 2월 24일).

<부표 2>에서처럼 일본 측이 제시한 부록 초안에서 가장 쟁점이 된 것은 제1, 2, 4, 5관이었다. 제1관의 ‘設館駐京’은 이미 조규 때 불가하다고 했는데도 다시 일본의 초안인 부록 제1, 2관에 규정되어 제출되었다. 조선 측은 당연하게도 공사관은 서울에 머무르며 거주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제1, 2관을 삭제토록 했다.⁴⁴⁾

일본은 제4관에서 옛 왜관에 설치되어 진출할 수 없도록 막은 경계를 없애기 위해 우선 “일본인의 출입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왜관시대의 수문 철폐”를 주장했다. 제5관에서는 “의정한 조선 각항에 있는 일본인 민이 부근 지방을 한행할 수 있는 도로의 이정은 기지의 부두로부터 직경 10리(조선 100리)로 하고 ‘경성, 서포, 진도, 제주, 하동, 통영, 삼척, 대구 등과 중국 인민이 와서 장사하는 곳에서 행상’할 수 있는 통행과 통상의 권한을 주장했다.⁴⁵⁾ 이른바 개항장의 자유로운 통상과 거주를 주장한 것이다.

반면, 조선 측은 제3관에서 “부산 초량관의 종전 설치되어 있는 수문은 철폐하고 새로운 정한을 정하여 표계를 세워 엄격히 방비하여 넘어가지 못하도록” 했다. 제4관에서는 일본인민의 통행과 통상을 조선이척 10리 내로 제한하고자 했다.⁴⁶⁾

협약 끝에 부록 제3관에는 일본 측 요구인 초량의 수문과 설문 철폐가 포함되는 한편, 조선 측 요구인 새로운 정계의 방한으로 표계를 세우는 것이 포함되었다. 제4관에는 조선 측 요구인 조선이법 10리는 받아들여졌다. 또한 각처 행상의 불기는 일본 측 주장인 ‘대구 및 기타’ 지역

44) 『倭使日記』 권4, 丙子 6월 18일 講修問答.

45) 『倭使日記』 권4, 丙子 6월 18일 講修問答. 外務省, 『修好條規附錄並貿易章程ノ草案取調ノ件』, 『日鮮修好條規關係一件』 제1권, 1876(B06150027100). 『我ヨリ修好條規附錄箇條書竝ニ貿易章程ノ草稿ヲ提出シ意見交換ノ件』, 『日本外交文書』 9, 1956.

46) 『廟堂講定條約』 『隣交謄錄』(古 4280-1), 1876, 80a쪽. 『倭使日記』 권5, 丙子 7월 5일 講修問答.

의 행상만 일부 받아들여져 “동래부 중 한 곳은 때때로 이 이정 내에서 왕래하며 일본국 인민은 뜻대로 한행하며 토산품과 일본국 물산을 매매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⁴⁷⁾

그 밖에 제6관의 조선 인민의 자유로운 일본 도항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고쳤으며, 제7관의 일본인 사망에 따른 적당한 장소의 매장에 대해 초량 인근으로 제한했다. 또한 제8관의 지정 항구에서 일본 화폐만 통용하도록 한 것은 일본 상인의 조선 화폐 사용을 허가하는 한편, 사주자의 처벌 규정을 함께 넣었다. 제10관의 측량선 민가 편의 제공은 관에서 하도록 함으로써 자유로운 통항을 막고자 했다.⁴⁸⁾

이상과 같이 부록의 체결과정을 통해 볼 때, 일본의 일방적인 의도였던 개항장을 토대로 한 자유로운 통상, 통행, 거주는 조선 측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관철되지 못했다. 특히 개항 및 개항장과 관련해 조선 측의 대응은 자못 강경했다. 이 때문에 외교관조차 서울 거주와 조선 안으로의 진출은 막혔다. 그나마 정계의 방한으로써 표계가 설치된 개항장 내에서 일본인들의 자유는 어느 정도 인정되었다. 이 또한 조선 안으로의 진출을 의미하지 않았고 오히려 철저하게 막혀버렸던 것이다.

조선 측의 강경한 입장을 돌파하기 위해 일본은 자국민의 거주와 통상이 가능한 구체적인 개항장의 설정에 들어가려고 다시 조규의 실천세목을 위한 협상에 나섰다.⁴⁹⁾ 일본은 1876년 11월 13일 곤도 마스키[近藤眞鋤]를 부산관리관으로 파견하고,⁵⁰⁾ 관리관을 통해 동래부사 홍우창과 수호조규부록 제3, 4관에 규정한 일본인 거주지 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들어갔다. 일본 측은 먼저 조선 측(동래부사)에 7개의 안을 제시

47) 『고종실록』 고종 13년 7월 6일.

48) 『倭使日記』 권5, 丙子 7월 6일 講修問答.

49) 부산구조계조약과 관련된 내용은 필자의 「‘조계’와 ‘거류지’ 사이 - 개항장 부산의 일본인 거주지를 둘러싼 조선과 일본의 입장 차이와 의미」, 『한일관계사연구』 62, 2018, 349~352쪽을 토대로 일부 수정 정리한 것임을 밝혀둔다.

50) 「釜山管理官近藤眞鋤派出の件」 『舊韓國外交文書』 제1권(日案1), 1965, 11쪽.

했다.

일본이 제안한 7건은 첫째 수문·설문의 철거와 해관 대체, 둘째 해관 설치, 셋째 해관사무장정의 약정, 넷째 간행이정과 부산진입표 및 동래 통행, 다섯째 館地租 연50원 설정, 여섯째 관내 조선소유 東館3宇·西館 8宇의 해관 등 교환매수, 일곱째 관내 도로구거의 일본보수와 선창의 조선 수축증축이었다.⁵¹⁾ 협의한 결과,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은 12월 16일까지 수문과 설문 폐지, 해관 외 무역검사금지, 지조의 연50원 확정, 동관3우 중 관수가와 개시대청의 해관 등과 맞교환 및 서관8우 조선정부 의결 후 시행, 동래통행의 准單발급 등이었다.⁵²⁾

조선과 일본이 첨예하게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은 조규부록 체결 때와 마찬가지로 한행이정 10리와 범월을 금지하는 표계를 세우는 일, 그리고 영구적인 거주를 의미하는 처지를 대동하는 일이었다. 이는 개항의 의미에 따라 자유로운 항구적 거주와 통상을 바라는 일본과 그와 상관없이 제한된 영역 내에서의 일시적 거주와 통상만을 생각한 조선의 상반된 의도가 표출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조선 측은 조계 안에 일본인을 묶어두기 위한 수단으로 입구에는 해관을 설치하고, 출구에는 재판가를 조선인의 출입을 관리하기 위한 곳으로 설정하여 일본 측에 임차해 주지 않았다. 더불어 서관8우에 대해서도 정부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그 임차를 미뤘다.⁵³⁾ 결정적으로는 한행이정 10리와 그 진출 금지의 한계를 조선이법에 따라 ‘부산구조계’와 부산진성 사이의 開雲鎮

51) 在釜山日本總領事館, 『海關事務居留地設定等七件草』, 『新約後管理官與東萊府使約條草』, 1876.

52) 『修好條規實踐細目確認의 件』, 『舊韓國外交文書』 제1권(日案1), 1965, 15~16쪽.

53) 장순순은 일본이 이미 서관8우를 매수했기 때문에 조약 내용이 달라졌다고 판단했다(장순순, 앞의 논문, 142쪽). 하지만 일본 측은 ‘수호조규실체세목확인의 간’에서 정부 의결이 필요하다는 조선 측의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조약 초안에는 넣었지만 결국 매수할 수 없었고 최종 조약문에는 결국 넣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釜山府, 『釜山府史原稿』 第5部 第10卷 開港編(後期), 1938, 178쪽).

입구(將臺)에 세우고자 했다.

반면, 일본은 해관 외 조선 측 건물을 거주지 내에 두지 않으려 했다. 한행이정 10리도 일본이법에 따라 직선으로 계산해 그 표계를 부산진성(영가대)에 설치하도록 첨예하게 맞섰다. 결국 일본은 한행이정 10리와 그 표계에 대한 상반된 이견만 확인한 채 초안을 만들지 않을 수 없었다. 어느 정도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부록 3>과 같이 조약 초안인 <釜山草梁日居留地區管理約條(案)>이 일본에 의해 만들어졌다. 초안에서 일본은 자국민의 거주지를 ‘거류지’로 규정했다. 옛 왜관의 영역인 약 11만 평을 지도에 표시하고 지조는 연50원으로 매년 초에 모두 납부하기로 했다. 약 11만 평 내의 가옥도 모두 구매하기로 했다. 다만 붉은 색으로 표시된 조선소유의 동관3우와 서관8우, 총 11우는 이전과 같이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고, 노란 색으로 표시한 4우와 그 터는 조선정부가 소유하여 그 가운데 하나를 해관으로 쓰도록 했다. 조계 내 도로와 구거는 일본이 경리 보존하는 것으로 하고 선창만은 해관에 속하게 하여 보수는 해관이 맡았다.⁵⁴⁾

조선 측은 재차 수정하여 <부록 3>과 같이 비로소 조약을 체결했다. 조선은 옛 왜관 영역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 일본이 주장하는 ‘거류지’와 달리 ‘부산구조계’로 명명했다. 일본이 요구한 조선소유 11우의 무상 임차에 대해 서관8우와 동관1우인 옛 재판가는 제외시켰다. 동관2우도 옛 개선소와 창고 등 6우와 맞교환해 이를 해관과 그 부속 건물로 활용하고자 했다. 나머지는 일본 측의 제안을 어느 정도 수용했다.⁵⁵⁾ 조선 측의 의도는 명확했다. 전통적인 기반을 토대로 이를 넘어서 조선으로 진출하려는 일본에 대해 조선은 오히려 전통적인 기반에 기초하여 일본의 진출을 제한하고자 했다. 조계의 입·출구를 근대적 시설인 해관

54) 『釜山草梁日居留地區管理約條(案)』 『舊韓國外交文書』 제1권(日案1), 1965, 19~20쪽.

55) 『고종실록』 고종 13년 12월 17일.

과 이른바 경찰소(재판가의 이후 조선 측 활용),⁵⁶⁾ 그리고 한행이정의 한계를 입표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그렇게 ‘개항장’ ‘부산구조계’는 탄생했다.

이상과 같이 조규, 부록, 그리고 조약의 체결 과정과 그 내용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개항과 관련해 강제적이지도 일방적으로 불평등하지도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상호 평등한 조약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조규는 난징조약과 같이 최혜국 대우, 협정 관세, 영사 재판권이 모두 포함된 불평등 조약은 아니었다. 다만 영사 재판권과 무관세는 규정했기에 ‘불완전한 불평등 조약’이라고 할 수 있다.⁵⁷⁾

당연하게도 영사 재판권은 영토를 토대로 하는 근대적인 외교관계에서 불평등한 조항이다. 전통적인 입장에서 어땠을까? 아니 조선의 입장에서 어땠을까? 조선은 영사 재판권이 왜관시절과 동일한 것이기에 불평등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였다.⁵⁸⁾ 당시의 조약 체결 담당자들은 전혀 불평등하다고 느끼지 않았던 것이다.

무관세 규정도 마찬가지였다. 무관세 규정이 당장은 일본에 이익이 없다며 오히려 의아해했다. 협상 과정에 참여한 강위는 “한 가지 괴이한 것은 저 나라에서 우리나라와 통상한 후 무슨 이득이 있어 수고와 비용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거창한 일을 시행했는가”라며 중국의 예를 들어 오히려 조선에만 이익이고 손해가 없다고 했다.⁵⁹⁾ 이조차 일방적인 불평등 조약이라고 할 수 없는 점도 있었다.

더군다나 부록과 무역규칙의 무관세는 수입세뿐만 아니라 수출세까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조선 측에도 불리하지 않았다.⁶⁰⁾ 이후 수출세

56) 『浦山港見取圖』, 1881.

57) 김종학, 앞의 글, 2017, 112쪽. 月脚達彦, 앞의 글, 2010.

58) 『倭使日記』 丙子 1월 26일 啓下.

59) 『沁行雜記』 단락 12.

60) 김홍수, 「조일수호조규 부속 조약의 결과 속」, 『조일수호조규, 근대의 의미를 묻다』, 청아출판사, 2017, 160~161쪽.

와 관련된 ‘두모포 수세 사건’이 발발하면서 관세 자주권 확보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이다.⁶¹⁾ 여기서는 조선 측의 적극적 대응에 따른 조약 체결 과정이었기에 조선 측도 완전히 불평등하다고 느끼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그친다. 결국, 조선 측은 이러한 근대적 협상에서 무지하지 않았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켰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개항이 강제적이고 타율적이고 불평등한 조약관계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IV. 맺음말

이상과 같이 개항의 성격과 역사적 개념의 의미를 살펴본 결과, 몇 가지 점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먼저, 개항을 규정한 조규 등은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것과 같이 일본이 강제적으로, 힘의 우위 속에서 조선에 일방적인 불평등한 조약을 체결토록 한 것은 아니었다. 조선 측은 이미 일본의 의도를 어느 정도 간파하고 있었다. 그에 대한 준비가 충분했다고 할 수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개항을 둘러싼 조규의 체결과정에서 일본의 일방적인 이해관계에 끌려가지 않도록 주도적으로 대응하며 평등성을 보장하고자 노력했다. 그와 같은 가운데 개항이 이루어졌다.

한편, 개항이라는 용어는 1876년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다. 즉, 개항이라는 말은 근대적인 용어였다. 이 새로운 용어가 지닌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가. 개념사 연구방법론 가운데 하나인 의미장 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개항은 만국공법에 기초한 조약에 따라 자유로운 통상, 거주, 통행이 가능한 공간과 외교공간의 출현이 가능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

61) 박한민, 앞의 글, 2017, 21~39쪽.

었다. 물론 그러한 의미는 관찰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시기가 늦춰지기도 했다. 하지만 개항의 개념적 의미 속에 지속되었음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현재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항의 연원을 1876년 개항의 강제성과 불평등성이라는 부정적 성격으로부터 벗어나 이른바 ‘자주적’이라는 1407년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주장은 단편적인 역사적 이해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개항 개념과도 잘 맞지 않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하물며 개항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연원을 1407년으로 끌어올리려는 첫 시도가 일제강점기 부산의 일본인에 의해 추진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1876년 개항의 부정적인 일면에 사로잡혀 1407년의 이른바 부산포에 興利倭船이 ‘到迫’하도록 한 것을⁶²⁾ 개항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주장의 시작이 일제강점기 일본인들 스스로의 역사관을 확장하고 대변하는 개념과 잇닿아 있다면 이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⁶³⁾

역사적 사건의 청산과 새로운 역사적 개념의 사용은 제대로 된 이해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단순히 현재의 이의 때문에 일면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이용하고자 하는 논의나 그저 오래된 역사를 만들어 우위에 서려고 하는 욕망은 근대가 우리에게 주입한 위계질서의 또 다른 판본과 다르지 않다.⁶⁴⁾ 우열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를 통한 상호 이해에 기초하여 현재와 미래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역사의 오래됨을 억지로 만들어 정체성을 형성하기 보다는 부산의 역사를 그간의 민족사 내지 국가사인 대륙사가 아니라 지역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⁶⁵⁾ 또한 글로컬 히스토리(Glocal history)인 해양사, 즉 국가 또는 지

62) 『태종실록』 태종7년 7월 27일.

63) 차철욱, 앞의 글, 2018, 49-50쪽.

64) 에릭 홉스봄 외 지음, 『만들어진 전통』, 휴머니스트, 2004.

65) ‘지역사로의 전환’은 패러다임 전환의 일종인 ‘공간적 전환’, ‘언어적 전환’과 같은

배 권력과 상관없이 지역민들에 의해 바다를 통해 이루어졌던 수많은 교류의 역사를 조사, 발굴하고 이로부터 현재와 미래의 소중한 교훈과 지혜를 얻는 것이 더 의미 있지 않을까 한다.

| 참고문헌 |

1. 자료

- 『태종실록』, 『세종실록』, 『고종실록』
『倭使日記』(奎貴 16034-v.1-14), 『隣交謄錄』(古 4280-1)
『沁行日記』上·下, 『乙丙日記』, 『沁行雜記』
在釜山日本總領事館, 『新約後管理官與東萊府使約條草』, 1876.
外務省, 『日鮮修好條規關係一件』 제1권, 1876(B06150027100).
『浦山港見取圖』, 1881.
田保橋潔, 『近代日鮮關係の研究』上, 朝鮮總督府中樞院, 1940.
『日本外交文書』 9, 1956.
『舊韓國外交文書』 제1권(日案1), 1965.
신헌 지음·김종학 옮김, 『심행일기』, 푸른역사, 2010.
김종학 옮김, 『국역 을병일기』, 국립중앙도서관, 2014.

2. 저서 및 논문

- 김종학, 「조일수호조규는 포함외교의 산물이었는가?」, 『역사비평』 114, 2016.
김학이, 「롤프 라이하르트스의 개념사」, 『개념사의 지평과 전망』, 소화, 2009.
라인하르트 코젤렉, 『지나간 미래』, 문학동네, 1998.
롤프 라이하르트, 「역사적 의미론: 어휘통계학과 신문화사 사이」, 『개념사의 지평과 전망』, 소화, 2009.
박준형, 「개항을 바라보는 시선의 (불)연속」, 『역사비평』 114, 2016.
박한민, 「조일수호조규 체제의 성립과 운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의미로 완전히 새로운 역사적 전환을 의미한다.

- 안종철, 『19세기 '국제법'의 성격과 조일수호조규(1876)』, 『역사비평』 114, 2016.
- 에릭 홉스봄 외 지음, 『만들어진 전통』, 휴머니스트, 2004.
- 이시카와 료타, 『화교·화인의 시점에서 본 아시아 속 조선 개항』, 『역사비평』 114, 2016.
- 이영호, 『한국의 '수호통상' 확대와 개항도시의 성격』, 『동아시아 개항도시의 형성과 네트워크』, 글로벌콘텐츠, 2012.
- 한승훈, 『고립정책과 간섭정책의 이중주-조일수호조규에 대한 영국의 인식과 대응-』, 『역사비평』 114, 2016.
- 한일관계연구소 편, 『조일수호조규, 근대의 의미를 묻다』, 청아출판사, 2017.
- 전성현, 『'조계'와 '거류지' 사이-개항장 부산의 일본인 거주지를 둘러싼 조선과 일본의 입장 차이와 의미-』, 『한일관계사연구』 62, 2018.

투고일 : 2019. 06. 10. 심사완료일 : 2019. 07. 19. 게재확정일 : 2019. 07. 25.

<부표 1> 수호조규 초안, 수정안 그리고 최종안

	초안(일본)	수정안(조선)	최종안
前文	大日本國與 朝鮮國 素敦厚誼 歷有年所 今兩國情誼 視猶有未洽處 更欲重修舊好 固親睦 是以 大日本國 皇帝陛下 簡特命全權辦理大臣陸軍中將兼參議開拓長官黑田清隆 特命副全權辦理大臣議官井上馨 詣朝鮮國江華府 朝鮮國 王殿下 簡何官何某 各從所奉諭旨 茲議立條款開列于左	修好條規冊子頭辭 只舉國號 而不必稱以兩國君上位號之意 既有前送冊子 而此爲大關節未安之事故 所以有前送冊子也 今有一可援之例 中國現行英國條款頭辭 只稱大清國特簡大學士某大英國特簡伯爵某云云 今者只稱國號有何不可乎	大日本國與大朝鮮國 素敦友誼 歷有年所 今因視兩國情意未洽 重修舊好以固親睦 是以日本國政府簡 特命全權辦理大臣陸軍中將兼參議開拓長官黑田清隆 特命副全權辦理大臣議官井上馨 詣朝鮮國 江華府 朝鮮國政府簡 判中樞府事申楨 副總管尹滋承 各遵所奉諭旨 議立條款 開列于左
제1 관	朝鮮國 自主之邦 與日本國 保有平等之權 爾後兩國欲表和親之實 彼此互以同等之禮儀相待 不可毫有侵越猜嫌 先以從前爲交情阻塞之患諸例規 悉革除開擴寬裕弘通之法 盡力以期永遠安寧	別無可論	朝鮮國自主之邦 保有與日本國平等之權 嗣後兩國欲表和親之實 須以彼此同等之禮相待 不可毫有侵越猜嫌 宜先將從前爲交情阻塞之患諸例規 一切革除 務開擴寬裕弘通之法 以期永遠相安
제2 관	日本國朝廷 自修好之日十五月後 派出使臣到朝鮮國京城 須得親接秉權大臣商議交際事務 此使臣或留滯京城 或隨事務整理 直歸國 共任其時宜 朝鮮國朝廷 隨時派出使臣到日本國東京 須得親接外務省貴官 商議交際事務 此使臣 或留滯東京 或隨事務整理 直歸國 亦任其時宜	修好之後 不可無兩國使价往來 而我使則到彼 親接外務省貴官 彼使則來此 親接秉權大臣云者 恐非平等之禮也 彼使見我大臣 則我使亦見彼大臣 我使只接外務省 則彼使當接禮曹 蓋我國則交鄰之事 禮曹掌之 與彼之外務省 何異焉 開館港口 定約通商以後 不必更有整理之事務 設或有之 隨其大小 自該國官及該地方官 會商辦理 可也 何必使臣之留滯於京城乎 且地隔滄溟 涉險惟艱 使价聘報 實屬兩國大事 而有難頻繁 不得不十年或十五年酌定期限 而往來 是爲兩國俱便之道 此意明白講定	日本國政府 自今十五個月後 隨時派使臣 到朝鮮國京城 得親接禮曹判書商議交際事務 該使臣駐留久暫 共任時宜 朝鮮國政府亦隨時派使臣 到日本國東京 得親接外務卿商議交際事務 該使臣駐留久暫 亦任時宜

제3관	爾後 兩國往復公文 日本國用其國文 朝鮮國用眞文	不必爲拘	嗣後兩國往來公文 日本用其國文 自今年間 別具譯漢文一本 朝鮮用眞文
제4관	朝鮮國釜山草梁日本公館久已爲兩國人民通商之場 自今改革從前慣例 今般以新立條款爲憑準 措辦貿易事務 且朝鮮國朝廷 開第五款所指定之二口 準聽日本國人民往來通商 就該所賃借地面 造營家屋 又賃借所在朝鮮國人民屋宅 亦各隨其便	既許通商 則事勢自然如此 但他處設館 亦必有定界之防限 不可越界行走 與我民雜處 必生事端 大非和好永久之道矣 且所定界限之當爲幾里 似必各隨地形劃定 而不可稍大於草梁館大小耳	朝鮮國釜山草梁項 立有日本公館久 已爲兩國人民通商之區 今應革除從前慣例及歲遣船等事 憑準新立條款 措辦貿易事務 且朝鮮國政府 須別開第五款所載之二口 準聽日本國人民往來通商 就該地賃借地基 造營家屋 或僑寓所在人民屋宅 各隨其便
제5관	永興府海口屬咸鏡道永興府 開港之期 自日本曆明治九年二月 朝鮮曆丙子正月算之 以十五日爲其期 一口京畿忠清全羅慶尙四道中 檢視通商便利之口岸 可以指定地名 開港之期 自日本曆明治九年二月 朝鮮曆自丙子正月起算 共以二十月爲其期	永興乃是國家龍興之基 而奉有原廟 其所肅敬 與他自別 豈無他處而必於此地乎 咸興安邊文川俱是先寢所奉 萬無以聽許耳 又一口之畿湖兩南中 云者 京畿兩湖之不可許 無容更言 嶺南沿海中 聽其指定 可許一處耳	京畿忠清全羅慶尙咸鏡五道中 沿海擇便通商之港口二處 指定地名 開口之期 日本曆自明治九年二月 朝鮮曆自丙子年二月起算 共爲二十個月
제6관	爾後 日本國船隻 在朝鮮國沿海 遭際大風 又薪糧窮竭 不能達指定港口時 不論何港灣 寄泊船隻 避風波之險 可得買辦要用物品 修繕船具 買求柴炭等 其供給費用 雖船主賠償 凡是等事 地方官及人民體察其困難 加眞實憐恤 無救援不至 勿敢吝惜補給 倘又兩國船隻 於大洋中全破壞 舟人漂着於地方 則該地方人民 即時施救助保全 各員姓名 稟地方官 該官護送其本國 或交付其近傍在留本國官員	俱可聽施	嗣後日本國船隻 在朝鮮國沿海 或遭大風 或薪糧窮竭 不能達指定港口 卽得入隨處沿岸支港 避險補缺 修繕船具 買求柴炭等 其在地方供給費用 必由船主賠償 凡是等事 地方官民 須特別加意憐恤 救援 無不至補給 勿敢吝惜 倘兩國船隻 在洋破壞 舟人漂至 隨處地方人民 卽時救恤保全 稟地方官 該官護送其本國 或交付其就近駐留本國官員

제7관	朝鮮國沿海島嶼巖礁 從前無經審檢 故極爲危險 依日本國航海者 自由測量海岸 定其位置淺深 編製圖誌 使兩國船客 得避危險 安穩航通	俱可聽施	朝鮮國沿海島嶼巖礁 從前無經審檢 極爲危險 準聽日本國航海者 隨時測量海岸 審其位置深淺 編製圖志 俾兩國船客 以得避危就安
제8관	爾後 日本國朝廷 隨時設置管理日本國商民之官於朝鮮國指定港口 交涉兩國之事件 則須會商該地方官因辦理	俱可聽施	嗣後日本國政府 於朝鮮國指定各口 隨時設置管理日本國商民之官 遇有兩國交涉案件 會商所在地方長官辦理
제9관	兩國既經通好 彼此人民各自任意貿易 兩國官吏毫無干涉 不得立貿易限制禁阻之	俱可聽施	兩國既經通好 彼此人民各自任意貿易 兩國官吏毫無干預 又不得限制禁阻 倘有兩國商民 欺罔銜賣貸借不償等事 兩國官吏 嚴拿該通商民 令追辨償欠 但兩國政府 不能代償
제10관	日本國人民 在留朝鮮國指定之港口 若犯罪科交涉朝鮮國人民之事狀 須歸日本國官員審斷 若朝鮮國人民犯罪科交涉日本國人民之事件 均歸朝鮮國官員之查辦 各自據其國律裁判 毫無偏頗 務示公平允當	彼我人有罪犯 各自彼我官 卽地會同 查辦用律 尤爲明白相孚之道	日本國人民在朝鮮國指定各口 如其犯罪 交涉朝鮮國人民 皆歸日本國審斷 如朝鮮國人民犯罪 交涉日本國人民 均歸朝鮮官查辦 各據其國律訊斷 毫無回護袒庇 務昭公平允當
제11관	兩國既經通好 須別設立通商章程 以與兩國商民之便利 且現今所議立各條款中 宜更補添細目 以要分條條件 則自今不出六個月 兩國別命委員 會朝鮮京城或江華府 以商議定立	各條款中細節目 只宜今番一一分解講定 何必更煩委員會商耶	兩國既經通好 須另設立通商章程 以便兩國商民 且併現下議立各條款中 更應補添細目 以便遵照條件 自今不出六個月 兩國另派委員 會朝鮮國 京城或江華府 商議定立

제12관	日本國從前 准外國人民通商各港口 均許朝鮮國人民來往貿易 他國爾後朝鮮國修通好 議立和約 若有此條約內所不裁 而別許他國條件 則日本國亦無不同得其特典	我國本不與他國相通 而惟日本則鄰誼相好久矣 安有他別國之通好立約等事 本不必舉論矣 以此明白答之 爲好耳	X
제13관	右十二章條約內 以議定之日 兩國朝廷 信守遵行之始 不得復變革 須逮之永遠 固兩國和親 爲此作約書二本 兩國委任大臣 各印互相交付 以昭遵信	亦可聽施	右十一款議定條約 以此日爲兩國信守遵行之始 兩國政府不得復變革之永遠信遵 以敦和好矣 爲此作約書二本 兩國委任大臣各鈐印 互相交付以昭憑信

[출전] 『沁行日記』上, 丙子正月十九日(양력 1876년 2월 13일); 『倭使日記』, 丙子正月二十六日 啓下; 『沁行日記』下, 丙子正月二十八日(양력 1876년 2월 22일); 『倭使日記』 권2, 丙子正月三十日 啓下; 『沁行日記』下, 丙子二月一日(양력 1876년 2월 25일); 『日省錄』高宗13년 1월 30일; 『高宗實錄』高宗13년 2월 3일.

[비고] 밑줄 및 강조는 필자

<부표 2> 수호조규부록의 초안과 수정안

	초안(일본)	수정안(조선)	최종안
제1관	嗣後兩國都府設置使臣館舍或賃借隨處人民房屋或賃借地基以新築構造各從其時宜	公使官不可留住京城事	各港口駐留日本國人民管理官 於朝鮮國沿海地方日本國諸船致敗緊急 得告地方官 往過該地沿路
제2관	使臣及眷屬隨員及駐留朝鮮各口日本管理官俱可得經過朝鮮國內地清國北京得往來事		
제3관	使臣館及管理官所發之文移書信郵致賃銀事後辨償或雇人民專差各從其便		

제4관	<p>在議定朝鮮通商各口日本人民之租賃地基居住者須與地主商議以定其額屬官地者納租與朝鮮人民同如夫釜山草梁項日本館從前設有守門以防歇日本人外出朝鮮政府今令之廢撤嗣後令他二口無復有設關門以防人民往來</p>	<p>開港處行進程限一依草梁館事</p>	<p>在議定 朝鮮國通商各口日本國人民之租賃地基居住者 須與地主商議 以定其額 屬官地者納租 與朝鮮國人民同 若夫釜山草梁項日本館 從前設有守門設門從今廢撤 一依新定程限立標界上 他二港口 亦照此例</p>
제5관	<p>在議定朝鮮各口日本人民可得間行道路里程自各埠頭起算直經十里日本里法爲限在此里程外之處指定其地名須豫徵知地方官管理官爲之所此里程內日本人民可得隨意行步或路次餉宿買賣土宜及日本物產日本商民得每歲限定時期行商京城西浦珍島濟州河東統營三陟大邱等各所及清國人民來商之地</p>	<p>各處行商不可許施事</p>	<p>嗣後於釜山港口 日本國人民可得間行道路里程 自埠頭起算 東西南北各直徑十里朝鮮里法爲定 至於東萊府中一處 特爲往來於此里程內 日本國人民隨意間行可得買賣土宜及日本國物產</p>
제6관	<p>在議定朝鮮各口日本人民可得賃雇朝鮮人民若朝鮮人民有欲到日本者除罪犯事故外朝鮮政府有不韋且抑其情願</p>		<p>在議定 朝鮮國各口日本國人民 可得賃雇朝鮮國人民 若朝鮮國人民得其政府之允准 來於日本國 亦無礙</p>
제7관	<p>在議定朝鮮各口日本人民如病故可得撰適宜之地以埋葬</p>		<p>在議定 朝鮮國各口日本國人民 如病故 可得撰適宜之地以埋葬 一依草梁遠近爲之</p>
제8관	<p>日本人民可得用本國現行諸貨幣與朝鮮國人民所有物交換朝鮮人民用其所交換之日本諸貨幣以得買日本所產之諸貨物以是在朝鮮國指定諸口則可得人民互相通用朝鮮國銅貨幣日本人民得隨意使用之出入之</p>		<p>日本國人民 可得用本國現行諸貨幣 與朝鮮國人民所有物交換 朝鮮國人民 用其所交換之日本國諸貨幣 以得買日本國所產之諸貨物 以是在朝鮮國指定諸港則可得人民互相通用 朝鮮國銅貨幣 日本國人民得使用運輸之事 兩國人民敢有私鑄錢貨者 各用國律</p>

제9관	朝鮮人民所買得於日本人民貨物或其贈遺之各物隨意使用無妨		朝鮮國人民所買得於日本國人民貨物 或其贈遺之各物 隨意使用無妨
제10관	從修好條規第七款所載有日本測量船放小船測量朝鮮沿海或際風雨或潮退不能歸本船可得隨時投宿邊人家或就其地買辦船內應用物品		從修好條規第七款所載 有日本國測量船 放小船 測量朝鮮國沿海 或際風雨 或退潮 不能歸本船 該處里正 安接近地人家 如有需用物品 自官辦給 追後計償
제11관	朝鮮國未曾與海外諸國通信而日本則異于此修好經年所締盟有友儀嗣後諸國船舶爲風波所窘迫漂到沿邊地方則朝鮮人民須於理無不愛恤之該漂民望送還於其本國朝鮮政府達致該國在留日本官員該官員無不領諾之		朝鮮國未曾與海外諸國通信 而日本則異于此 修好經年 所締盟有友誼 嗣後諸國船舶爲風波所窘迫 漂到沿邊地方 則朝鮮國人民須於理無不愛恤之 該漂民望送還于其本國 朝鮮國政府遞致各港口日本國管理官 送還于本國 該官員無不領諾之
제12관	右十一款章程及通商規則共有與修好條規同一權理兩國政府所可遵行之無敢有違然而此各款中若兩國人民於交際貿易實踐有認頓爲障礙不可不釐革則兩國政府速作議案前一年報知之以協議立		右十款章程及通商規則 共有與修好條規 同一權理 兩國政府可遵行之 無敢有違 然而此各款中 若兩國人民於交際貿易實踐 有認頓爲障礙 不可不釐革 則兩國政府速作議案 前一年報知之 以協議改立

[출전] 『倭使日記』 권4, 丙子 6월 18일 講修問答; 『倭使日記』 권4, 丙子 6월 21일 講修問答; 『倭使日記』 권5, 丙子 7월 6일 講修問答; 『고종실록』 13년 7월 6일.

[비고] 밑줄은 필자

<부표 3> 부산구조계조약 초안과 최종안

釜山草梁日居留地區管理條約(案)	釜山口租界條約(초) 釜山港居留地借入約書(일)
<p>朝鮮國慶尙道東萊府所管草梁項一區，古來爲日本國官民居留之地，其幅員如圖。圖中家屋，著赤色者十一宇，皆係朝鮮國政府構造，依例無納租賃也。日本國管理官近藤眞鋤，朝鮮國東萊府使洪祐昌，會於某地，照遵兩國委員曩所議定修好條規附錄第三款旨趣，自今約地基納租歲金五拾圓，每歲抄完清翌年租額。家屋則日本國政府出價金圓，盡買取之。更以黃色爲輪廓者四字，再約爲朝鮮國政府之有，以其一充海關，而四字所在之地基亦屬焉。其他道路溝渠，皆賴日本國政府之經理保存。如船艙則固屬海關，其修補之，亦爲海關所任也。因併錄之，副以地圖，互鈐印，以防他日之紛拏。如是。</p> <p>大日本國 紀元二千五百三十六年 明治九年十二月 日 管理官 近藤眞鋤 大朝鮮國開國四百八十五年丙子十一月 日 東萊府伯 洪祐昌</p>	<p>朝鮮國慶尙道東萊府所管草梁項一區，古來爲日本國官民居留之地，其幅員如圖。圖中舊稱東館，區內家屋，著赤色者三字，係朝鮮國政府構造，日本曆明治九年十二月十二日，朝鮮歷丙子年十月二十七日，日本國管理官近藤眞鋤，會同朝鮮國東萊府伯洪祐昌，照遵兩國委員曩所議立修好條規附錄第三款旨趣，二月十七日，再經協議，除舊稱裁判家者外，以朝鮮國政府所構貳字，與日本國政府所構舊稱改船所及倉庫等六字交換，以充兩國官民之用。嗣後當屬朝鮮國政府家屋七宇，則黃色爲輪廓，以昭其別，地基亦屬焉。</p> <p>【但地基，以朱劃之。】其他地基-道路-溝渠，悉皆歸于日本國政府之保護修理，船艙則朝鮮國政府修補之因。並錄副以地圖，互鈐印以防他日之紛拏如是。</p> <p>大朝鮮國丙子年十二月十七日 東萊府伯 洪祐昌 印 大日本國明治十年一月三十日 管理官 近藤眞鋤 印</p>

[출전] 『釜山草梁日居留地區管理條約(案)』 『舊韓國外交文書』 제1권(日案1), 1965, 19~20쪽 ; 『고종실록』 고종 13년 12월 17일

[비고] 밑줄은 필자

| Abstract |

The Conceptual Meaning and Historical Character of 'Open Port' in 1876

Jeon, Sung-Hyun

The term 'open port' was not used before 1876. In other words, the term open port is 'modern language'. Then, what is the historical meaning based on the conceptual meaning of this term? It is necessary to look into 'the semantic fields', one of the research methodology of conceptual history. In this way, the open port was made by a treaty based on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萬國公法). Also, it can be said that it has historical meaning that free space of trade, residence, and passage and the appearance of diplomatic space accordingly. Of course, this meaning was partly achieved through the open port in 1876, but the rest was not so and it was done over time. However, such meaning continued in the conceptual meaning of the open port.

In addition, the treaty concluded in the period around 1876 was not by Japanese forced force or by unequal conclusion to Joseon, as it has been known so far. The Joseon side had already been aware of Japan's intentions to some extent. Even if there was not enough preparation for him, he responded as actively as possible. Therefore, in the process of signing the treaty surrounding the open port, we tried to ensure our own equality by responding to the unilateral interests of Japan as much as we prepared. The open port was done in the same way.

If so, the claim of '1407 Opening Port', which is currently being raised in some parts, is because it misunderstood the conceptual meaning of the

opening port and the nature of the opening port in 1876. Again, ‘open port’ is a modern language and its meaning is also based on international law, so it can not be used as a concept referring to the historical situation of premodern times. In addition, the open port in 1876 can not define the personality only in the negative aspect of coercion and inequality. Rather, it can be said that there was a strong movement to guarantee independence and equality from the standpoint of Joseon.

Key words : open port, 1876, 1407, the semantic fields, Joseon-Japan Treaty, Busan Port Concession Treaty